

# 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79,201,454	77,376,044
일반회계	2,153,760,674	64,612,820
특별회계	425,440,780	12,763,223
공기업특별회계	195,417,649	5,862,529
상수도사업	82,949,524	2,488,486
하수도사업	112,468,125	3,374,044
기타특별회계	230,023,131	6,900,694
공유재산관리	84,821,449	2,544,643
의료급여기금	9,686,244	290,5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7,030	511
교통사업	56,693,720	1,700,812
철도건설사업	44,639,114	1,339,173
폐기물처리시설	2,827,383	84,821
도시재정비촉진	1,397,070	41,912
도시개발	6,738,969	202,169
공공시설등 설치	348,438	10,453
문화시설건립	919,590	27,588
도시재생	18,099,669	542,990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3,834,455	115,03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66,706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2,666,706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00천원

제 7 조 202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